

ICT 학점연계 인턴십 규정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수원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교”라 한다.) 학칙 제33조의 1항의 현장실습 수업 (이하 “현장실습”이라 한다.)에 의거, “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” (이하 “ICT 특별법”이라 한다.) 제 12조에 따른 “ICT 학점연계 프로젝트 인턴십”에 학생들의 적극 적인 참여를 유도하고, ICT 현장실습의 성공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용어의 정의)

- ① 현장실습이란 학생들에게 학기 또는 방학 중 일정기간 동안 국내외 유수의 기업에서 현장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기업이 요구하는 현장의 전문지식을 얻는 것을 말한다.
- ② ICT 현장실습이란 ICT 특별법에서 규정된 학점이수 인턴제도에 따른 취업형과 취업형 및 실습 형 현장실습을 말한다.

제3조 (교육과정의 편성 및 이수에 관한 사항) ICT 학점연계 프로젝트 인턴십 교육과정은 실습기간에 따라 ICT 학점연계 프로젝트 인턴십 1, 1-1, 2, 2-1, 3, 3-1, 4 로 편성하며, 모두 전공선택 과목으로 학점을 취득한다. 실습기간에 따른 학점부여 기준은 수원대학교 산업체 현장실습 규정에 준함을 원칙으로 한다.

- ① ICT 학점연계 프로젝트 인턴십 1, 1-1, 2, 2-1, 3, 3-1은 학기중 또는 계절학기 중 실습을 수행하며, 그 결과와 실습 기간에 따라 학점을 부여한다.
- ② ICT 학점연계 프로젝트 인턴십 4는 정규 일반 학기 중에 실습을 수행하며, 그 결과에 따라 학점을 부여한다. (※ 단, ②의 경우 성적장학금 대상자에서는 제외된다)
- ③ ICT 학점연계 프로젝트 인턴십 과목 이수는 총 15학점을 초과하지 못함을 원칙으로 한다.

〈실습 기간에 따른 학점 이수구분 및 인정학점 기준표〉

기간구분	교과목명	실습기간	이수구분	인정 학점
시간제 (방학중, 학기중 가능, 하루 8시간 근무, 40시간/주, 1주일은 5일 기준)	ICT 학점연계 프로젝트 인턴십 1	3주 이상 ~ 4주 미만	전공선택	3학점
	ICT 학점연계 프로젝트 인턴십 1-1	3주 이상 ~ 4주 미만	전공선택	3학점
	ICT 학점연계 프로젝트 인턴십 2	4주 이상 ~ 8주 미만	전공선택	6학점
	ICT 학점연계 프로젝트 인턴십 2-1	4주 이상 ~ 8주 미만	전공선택	6학점
	ICT 학점연계 프로젝트 인턴십 3	8주 이상 ~ 15주 미만	전공선택	9학점
	ICT 학점연계 프로젝트 인턴십 3-1	8주 이상 ~ 15주 미만	전공선택	9학점
학기제 (전일제)	ICT 학점연계 프로젝트 인턴십 4	15주 이상	전공선택	15학점

제4조 (강좌 개설에 관한 사항) -삭제-

제5조 (수강 신청에 관한 사항)

- ① 해당학기 등록을 마친 ICT, ICT 서비스, ICT 융합 관련 학과 전공자, 복수전공자 또는 부전공 자로서, 2, 3학년은 실습, 4학년은 취업 또는 창업을 목적으로 인턴십 교과목을 신청할 수 있다.
- ② 현장실습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지도교수 및 소속학과(부)장의 승인을 받아, 소정의 신청서를 ICT 학점연계 프로젝트 인턴제도 과제책임자에게 제출한다.

제6조 (현장실습생의 선발에 관한 사항)

- ① 총장은 연수기업 인재상 적합성 평가와 도전·열정·창의성 평가 및 직전 학기 ICT 관련 전공학점 등의 선발기준에 의거하여 실습 분야와 실습 여건 등을 고려한 심사를 거친 후 ICT 현장실습생을 선발한다.
- ② 전향의 선발을 위해 필요시에는 여학생과 취업정보처 관련 교육 수료자 및 본 대학교 ICT 특성화학과 재학생을 우대할 수 있다.
- ③ ICT 현장실습 대상자로 선발된 자는 총장의 허가 없이 현장실습을 포기하거나 휴학할 수 없다.

제7조 (현장실습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)

- ① 일반선택에 한하여 수강신청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학적과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한다.
- ② 현장실습을 완료한 학생은 현장실습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서류와 성적인정 요청서를 교과목 담당교수 또는 학적과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 평가반영비율은 실습기관평가(40%), 지도교수 평가(40%), 출근상황(20%)을 원칙으로 한다. 실습 기관과 지도교수는 프로젝트 결과의 우수성과 근무 성실성 및 수강생과의 상담결과를 기반으로 평가를 시행한다.
- ④ 취득한 학점은 Pass/Reject로 처리하고 평점평균(GPA)에는 가산하지 않으며 졸업학점에 포함한다.
- ⑤ 전공과목에 현장실습 또는 유사한 과목이 개설된 경우 전공학점과 중복하여 인정하지 않으며 각각 별도로 현장실습을 하여야 한다.

제8조 (ICT 현장실습대상기업)

- ①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
- ②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
- ③ 「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
- ④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법인·단체 또는 기관
- ⑤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
- ⑥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연구기관
- ⑦ 그밖에 대학의 실습학기제 운영에 적합하다고 학칙에서 정하는 정보통신 융합 등 분야와 관련 된 국내외의 기관, 기업 또는 단체

제9조 (ICT 인턴제도 적용대상 직무)

- ①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구현
- ② 하드웨어의 설계·개발 및 구축
- ③ 정보통신서비스
- ④ 그밖에 정보통신 융합 등 분야에 관련된 직무

제10조 (연수기업의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)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추천한 연수기업 중에서 본 대 학교의 산업체 현장실습 취지에 부합되며 수강생의 당해 기업 취업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

우선적으로 선발한다.

제11조 (연수기업과의 협약사항) 현장실습협약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.

- ① 현장실습에 필요한 교육 또는 실습(근무)계획
- ② 현장실습 기간 중에 학생의 보건 위생과 산업재해의 예방 및 보상
- ③ 현장실습생에 대한 수혜조건(후생복지 및 실습비 등)
- ④ 기타 관련기관의 정해진 서식이 있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합당한 식에 따를 수 있다.

제12조 (ICT 학점연계 프로젝트 인턴십 제도의 운영 및 지원) 총장은 ICT 학점연계 프로젝트 인턴십 관련 협약서에 따라,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턴제도 교육과정 운영비, 인턴제도 관련 교재비, 실습기자재비, 강사료 및 각종 수당, 현장실습생 인건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13조 (수강생 및 연수기업 지원 등)

- ① 수강생에게는 관련 규정에 따라 드림Job끼 마일리지를 부여할 수 있으며 장학생 선발, 외부과제 연구보조원 선발, 국내외 학술대회 및 공모전 지원 대상자 선발 시 우대할 수 있다.
- ② 연수기업에게는 본 대학교 가족회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으며, 산학 공동연구 참여와 본 대학 교 보유 연구 장비 이용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. 지도인력에게는 본 대학교 겸임 교수 임용 및 강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.

제14조 (ICT 현장실습의 의무위반자조치)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학점을 인정하지 아니 하며 사안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- ① 현장실습기관 내규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무단 결근자
- ② 고의적으로 현장실습분위기를 저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
- ③ 고의적으로 현장실습기관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
- ④ 학생의 신분을 벗어난 행위로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

제15조 (보칙) 이 규정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교 학칙과 현장실습 기관과 체결한 협약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된 규정은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된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